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현  
전화 032-860-4340

**보도자료**  
2022. 8. 4.(목)

**제 목**

**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무역업자(구속) 및  
대학교수(불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22. 8. 5.(목) 말기 암 환자들을 상대로 맹물을 암치료제(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특수한 물 일명 '양화수로 소개)라고 속여 2억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대학교수를 불구속 기소하였음
  - ※ 공범인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22. 7. 29.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취지로 기각
- '20. 10.경 피해자들이 고소하고, '20. 11.경 언론에서 본건 피해 사례를 보도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 고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상호 전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에 끝에 '22. 2.경에야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 검찰은 피해자 2명, 피해금 8,500만원 상당의 사건을 송치받아 ① 피고인들이 제출한 양화수 복용자 명단 검증 ② 피고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 ③ 상담 녹취록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 2명, 1억 6,000만원 상당을 추가 인지함
- 철저한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암 환자 등 중병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효과가 불분명한 대체 약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는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임

## I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 피고인

- A○○(64세, 무역업자)
- B○○(59세, 모 대학 대체치유학과 교수)

####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 11. 피해자 C, D에게 암 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 피고인 A는 2020. 3. ~ 6. 피해자 E, 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로부터 8,000만원 편취, 피고인 A가 E로부터 8,000만원 편취 부분은 검찰에서 추가 인지

## II

### 수사 경과

- '20. 10. 피해자 C(7,000만원), F(1,500만원) 경찰 고소
- '20. 11. 모 방송국 본건 피해 사례 방송
- '21. 6. 14. 경찰 피고인 A 기소 의견 송치, 피고인 B 혐의없음 불송치
- '21. 8. 31. 인천지검, 피고인 A 보완수사 요구 및 피고인 B 재수사 요청
- '22. 2. 8. 경찰, 피해자 C, F 합계 8,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 송치
- '22. 7. 27. 검찰, 피해자 D, E 합계 1억 6,000만 원 추가 범죄 인지 및 피고인 A, B 구속영장 청구(사전)
- '22. 7. 29. 인천지법, 피고인 B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 A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불출석
- '22. 8. 1. 인천지법,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22. 8. 4. 피고인 A 구속 기소, 피고인 B 불구속 기소

### III

## 수사 착안 사항

- 피고인들은 맹물을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소개하여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기존에 양화수를 구매한 환자들을 대동하여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B가 운영하는 암환자 힐링센터에 데리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 양산함
-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환불 요청하는 내용이 방송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상호 전가하거나 추가 피해자들의 편취 금액으로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 일부를 반환하여 고소 취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사건을 지연함
- 이에 경찰은 '21. 6. 14. 피고인 A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하였으나, '21. 8. 31. 검찰이 보완수사 및 재수사요구에 따라 '22. 2. 8. 피고인 A, B에 대하여 2건 8,500만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 검찰은 사건 송치 후 ▲ 양화수 구매자 명단 확보, ▲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 환자들에 대한 상담 녹취록 및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분석하여 2건 1억 6,0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도 명확히 밝힘
- ※ 구매자 명단과 관련자들 계좌의 상호 비교 검증, 약 4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 분석, 피고인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및 분석 추가 확인된 피해자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 실시

### IV

## 수사 의의 및 향후 조치

- 본건은 말기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행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여 2억 4,5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서민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임

- 그럼에도, 전국에 흩어진 피해자들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상호 범행 전가, 새로운 피해자들의 편취 금액으로 기존 피해자의 피해금원 일부 반환을 통한 고소 취소 등으로 수사 및 실체진실의 발견이 지연되었는바, 다수의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극도의 상실감에 빠져 적극적으로 피해 호소조차 하기 힘들다는 의사 표명 까지도 하는 상황이었음
- 이에,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 요청, 송치 후 충실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소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철저한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암환자 등 중병 환자들을 상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대체 약품 등을 고가로 판매·편취하는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임 ☑